

법과대학 졸업논문제도 운영 내규

제1조(목적) ① 본 규정은 법과대학(법학·국제법무학전공) 졸업예정자들의 졸업논문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본 제도는 법과대학 졸업생으로서 법학전반에 관한 일반지식의 함양과 법적 표현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논문제출) 당해 학기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.

제3조 (제출시기) ① 졸업논문 제출 및 구술시험 시행시기는 매학기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부터 매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로 한다.

② 졸업논문 제출 및 구술시험 시행 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 (수료자) 수료자는 제3조 제 1항의 기한내에 졸업논문을 제출하거나 구술시험에 참여하여야 한다.

제5조 (심사교수) ① 졸업논문 또는 구술시험의 심사교수는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위촉한다.

②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/불합격으로 표기한다.

③ 졸업논문 또는 구술시험 심사 후 졸업에 대한 최종 판정은 주임교수가 참여하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6조 (논문 및 구술시험의 주제) 논문 및 구술시험의 주제는 헌법, 민법, 상법, 행정법, 형법, 국제법, 국제거래법, 경제법, 지적재산법, 민사소송법, 형사소송법, 세법, 환경법, 노동법, 경제법, 기초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로 한다.

제7조 (시행방법) ① 졸업논문 작성방법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형식에 준하여 작성한다.

② 구술시험은 심사교수 주관하에 면접형태로 진행한다.

제8조 (심사기준) 졸업논문 및 구술시험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학 관련 기초 및 일반지식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구현했는지 여부
2. 법학에 관한 기본 소양을 습득했는지 여부
3. 출처, 인용 등 논문 작성형식을 준수했는지 여부
4.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했는지 여부

제9조 (최종불합격자) 졸업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졸업할 수 없다.

제10조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에 의하고, 기타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대학의 관례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0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① 본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기존 졸업시험은 졸업논문제도로 대체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